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6시간이상	공단보험료	44,270	42,770	41,240	41,240
	본인부담금	6,641	6,416	6,186	6,186
8시간이상	공단보험료	55,080	55,580	52,020	52,050
	본인부담금	8,262	8,037	7,808	7,808
10시간이상	공단보험료	60,720	59,190	57,690	52,050
	본인부담금	9,108	8,879	8,654	7,808
13시간초과	공단보험료	65,110	63,600	62,100	52,050
	본인부담금	9,767	9,540	9,315	7,808
비급여 (식대)		식사비 1식 ₩3,500원 간식 2회 ₩1,00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 가산	2,262,000	2,028,000	1,700,640	1,567,440	1,345,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요원: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 48.7%